

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0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1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
- 나.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92년 건립, 9차에 걸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
- 소재지 :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(영등포동 7가 57)
- 시설규모 : 연면적 3,321.6㎡(지하1층~지상5층)
- 개관일 : 1992. 11. 3.
- 수탁자 :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
- 위탁기간 : 2014. 9. 25.~2017. 9. 24.(9차)
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

## 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9.25. ~ 2020.9.24.)
- 위탁업무
  -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
  - 교육사업(노동인권, 노동법, 성인지 등)
  -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
  -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소요예산('18년) : 3,410천원(시설 유지·보수비)
  - ※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#### 라.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

- `89.03.02 :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
- `90.02.13 :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(시장방침 제 346호) 수립
- `92.10.15 : 서울시근로자복지관(영등포동 7가 57) 준공(11.13 개관)
- `92.09.25 :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 (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)
- 위탁계약(재계약)체결 현황
  - 민간위탁계약 1차 : `92.09.25 ~ `93.09.24(1년)
  - 민간위탁계약 2차 : `93.09.25 ~ `96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3차 : `96.09.25 ~ `99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4차 : `99.09.25 ~ `02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5차 : `02.09.25 ~ `05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6차 : `05.09.25 ~ `08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7차 : `08.09.25 ~ `11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8차 : `11.09.25 ~ `14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9차 : `14.09.25 ~ `17.09.24(3년)

#### 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
-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, 조직 인프라 확보, 노동상담,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 중인 “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관”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9차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으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1)에 따라 조례안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
### 나.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을 두고 있으며,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및 복지관의 시설관리에 대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 중임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상담서비스 및 법률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, 노동관련 교육사업 및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.

### 〈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개요〉

- 소재지 :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
- 시설규모 : 3,321.6㎡ (지하 1층/지상 5층)

층별	면적(㎡)	용도
지하 1층	737.3	기계실, 전기발전실, 창고
지상 1층	606.38	어린이집
지상 2층	314.18	노동단체 사무실, 식당
지상 3층	454.58	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, 회의실(강의실), 노동법률지원센터 등
지상 4층	454.58	노동단체 사무실
지상 5층	454.58	대강당

- 인력현황 : 32명 (부속시설인 어린이집 인력 18명 별도)
- 운영내용
  - 서울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
  - 노동교육 및 각종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운영
  -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, 회의공간 제공
  -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운영 등

- 시가 최근 3년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한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, 민간위탁금은 모두 민간대행사업비 항목으로 근로자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사용하였음.

## 〈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위탁사업비 내역〉

(단위: 천원)

	민 간 대 행 사 업 비	세부 내역
2014년	43,065	-화장실 시설물 교체공사 -화장실 도색공사,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-급수용 펌프 교체공사
2015년	75,350	-엘리베이터 공사, 보일러 설치공사 -전기중앙분전반 교체공사 등, -냉난방 보일러세관 및 정화조 펌프교체 공사
2016년	62,420	-시수배관 및 정화조펌프 교체 -사무실 형광등 및 다운라이트 등 LED등 교체공사 -지하저수고 및 옥상 물탱크 청소, 옥상방수 공사
2017년	26,675	-승강기로프교체 및 도어안전장치 설치 -보일러 세관 등 보수

-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지난 3년간(2014~16년) 시가 교부한 민간대행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, 시설유지보수 외에도 노동법률상담, 노동법강좌 등 약 4,000회의 법률지원사업, 2,000여권의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등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운영과 어린이집, 대강당, 회의실 등의 복지관 시설들을 운용하였음.

※ 상세한 운영실적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참조

- 현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노후된 강당 시설의 증축 공사중이며,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변 환경개선 등 근로자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와 수탁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## 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현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, 노동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노동관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됨.
- 현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25년째 위탁운영중으로, 최근 3년의 위탁기간동안 노동법률상담 3,608건, 노동법 교육 156회,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상담 180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양호한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음.
- 또한 위탁기관인 한국노총에서 시설유지보수비용 이외의 복지관의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,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.
- 시는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